



합병심사와 관련한 국제적 공조의 모범사례

-WorldCom/Sprint 합병사건-

이기종 | 안동대 법학과 교수

머리에

세계화의 급진전으로 인한 국제적 기업활동의 증가는 여러 국가의 관할에 걸쳐 일어나는 합병을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국제적 합병을 규율하기 위한 통일된 규범의 제정이나 기관의 설립이 아직 요원한 상태에서, 국가간의 중복된 관할권이 가져올 갈등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현재로서는 관련당사국 간의 공조·협력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EU는 일찍이 이러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1991년 경쟁정책에 있어서의 양자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나,¹⁾ 미국의 전통적인 독점금지법 역외적용에 대하여 EU가 그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강화하면서 잠재되어 있던 마찰이 표면화하게 되었다. 마침내 1997년 미국이 승인한 Boeing사와 McDonnell Douglas사 간의 합병을 EU가 금지하면서, 양자간의 갈등은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였다.

본고에서 살펴볼 WorldCom사와 Sprint사 간의 합병사건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1991년

1)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ir Competition Laws, Sept. 23, 1991, U.S.-EC, 1995 O.J. (L 95) 47.



협정에서 만들어진 양자협력의 틀을 실제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최초의 성공사례이다.

사건의 경과

미국의 통신업체인 WorldCom사와 Sprint사는 1999년 10월 4일 1,290억 달러 규모의 합병을 선언하였다. WorldCom은 연수의 370억 달러의 범세계적 통신사업자로서, 세계최대의 인터넷 중추연결망 서비스(internet backbone service) 제공사업자이자, 미국내 두 번째 규모의 국내 및 국제 장거리전화 사업자이다. 또한 Sprint사는 연수의 170억 달러로서 인터넷 중추연결망 서비스 시장의 2인자이자, 국내 및 국제 장거리전화 시장의 서열 3위 사업자로서 여러 시장에서 WorldCom의 경쟁사업자이다.

유럽위원회에 의한 합병금지

양사의 합병신고를 받은 유럽위원회는 주로 최상위 인터넷연결 시장(인터넷 중추연결망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에 주목하였다. 즉, WorldCom/Sprint 합병회사는, 지역 사업자들이 인터넷망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권을 얻기 위해 의존해야 하는 수문장(gatekeeper)의 지위를 획득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양사는 Sprint사의 인터넷 서비스를 분리(divest)할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과거 MCI사와 WorldCom사간 합병 승인의 전제조건으로 행해졌던 유사한 조치가 실효성이 없었음에 주목한 유럽위원회는 합병금지 결정을 내렸다.²⁾

그러나 유럽위원회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범세계적 통신서비스 제공시장에서 WorldCom/Sprint 합병회사와 British Telecommunication/AT&T 연합이 공동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누릴 가능성은 다른 경쟁사업자들의 존재를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내 장거리전화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통한 미국과 외국간의 국제 음성전화 시장 공동지배 가능성은 유럽위원회의 관할권을 인정할 만큼 즉각적이고 예견 가능한 것이 못된다고 판단하였다.

2) Decision C(2000) 1693 final of 28 June 2000 in Case No. COMP/M.1714-MCI WorldCom/Sprint.



미국 연방법무부에 의한 민사소송 제기

연방법무부는 법원에 WorldCom/Sprint사 간의 합병 금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³⁾ 즉, 주거용 장거리 전화를 비롯한 여러 통신시장에 WorldCom사, Sprint사 및 AT&T사에 대항할 만한 경쟁사업자들이 없기 때문에 WorldCom/Sprint 합병이 저지되지 않을 경우 미국내 주요 통신시장의 다수에서 경쟁이 제한될 것이다. 이러한 시장에는 (i) 미국내 주거용 장거리전화 시장, (ii) 미국전역에 최상위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는 인터넷 중추연결망 시장, (iii) 미국과 50여개국 간의 국제 장거리전화 시장, (iv) 미국과 60여개국 간의 국제 전용선서비스 시장, (v) 미국내 대기업을 위한 데이터 네트워크 서비스(ATM 서비스용 등) 및 (vi) 미국내 거대기업들을 위한 주문형 네트워크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사건처리를 위한 미국과 EU의 공조

이 사건 처리를 위한 미국과 EU의 공조는 기본적으로는 1991년 협정의 틀을 따르고 있지만 유사한 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긴밀한 것이었다. 연방법무부와 유럽위원회의 직원들은 거의 매일 접촉을 가졌으며, 양사의 대표이사가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과 처음 만나는 자리 (pitch meeting)에 유럽위원회의 대표도 동석하는 최초의 기록을 남겼다.⁴⁾ 또한 연방법무부와 유럽위원회는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심사일정을 조율하였다. 그리고 유럽위원회가 미국내 장거리전화 시장과 관련된 쟁점에 관해 관할권을 주장하지 않은 것은 전술한 바와 같으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촉구하기도 하였다.⁵⁾ 한편 유럽의회는 유럽위원회의 합병금지결정 직후에 미국·EU간 협력이 적절하고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환영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양국의 이와 같은 공조의 결과 결국 WorldCom사와 Sprint사는 합병을 포기하였으나 WorldCom사는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였고,⁶⁾ 현재 이 사건은 유럽 제1

3) In re United States v. WorldCom Inc., Complaint, available at <http://www.usdoj.gov/atr/cases/f5000/5051.htm> (visited Aug. 11, 2003).

4) Report from the Commission: XXXth Report on Competition Policy 2000, SEC(01)694 final at 98.

5) IP/00/668: Commission Prohibits Merger Between MCI WorldCom and Sprint, available at http://europa.eu.int/rapid/start/cgi/guesten.ksh?p_action.gettxt=gt&doc=IP/00/668|0|AGED&lg=EN&display= (visited Aug. 11, 2003).

6) WorldCom, Inc. v. Commission, Case T-310/00, 2000 O.J. (C 355) 35.



심법원(the Court of First Instance)에 계류중이다.

국제적 합병사건 처리에 있어서 양자협력의 필요성과 한계

WorldCom/Sprint 합병사건에서 정립된 미국·EU간 공조체계는 AOL/Time Warner 사건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하였으나, GE/Honeywell 사건에서는 공조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결정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처럼 긴밀한 공조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결정이 나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불가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⁷⁾

첫째, 독점금지법의 목적에 관해 미국과 EU간에는 근본적인 입장차이가 있다. 미국독점금지법은 소비자복지의 증진을 궁극적으로 삼고, 합병심사에서도 효율에 초점을 맞추는 데 반해, EU의 경쟁법은 효율과 무관한 목적을 추구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경쟁적 우위에 대한 우려에 기초하고 있다.

둘째, 위와 같은 목적상의 상위는 합병관련 실체규범에도 반영되고 있다. 그리하여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독점을 창설하는 경향이 있는 합병을 금지하는 클레이튼법(the Clayton Act) 제7조의 기준과 시장지배적 지위를 창출 또는 강화하거나 유효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합병을 금지하는 EU의 합병규칙(Merger Regulation)의 기준은 실제사건에 적용되었을 때 상이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GE/Honeywell 합병사건에서 문제된 시장에서의 경쟁여건에 관한 평가에 있어서는 미국의 연방법무부와 유럽위원회가 유사한 결론을 내렸음에도 합병의 금지여부에 관하여는 상이한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다.

셋째, 미국과 EU간 합병사건 처리절차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즉, 합병심사개시 요건, 당사자가 제출할 정보의 내용, 신고 및 심사완료 일정 내지 시한 등에 관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합병규칙이 요구하는 빠듯한 일정에 쫓기는 유럽위원회가 서둘러 심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아직 심사중인 미국 경쟁당국에 대한 간섭으로 오해되기도 하는 것이다.

넷째, 합병심사가 중립적인 경쟁법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보호라는 관점에서 수행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관련당사국간 협력이 의존하는 현 체제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적 경쟁법질서에 대한 콘센서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국제적 합병

7) Sarah Stevens, The Increased Aggression of the EC Commission in Extraterritorial Enforcement of the Merger Regulation and Its Impact on Transatlantic Cooperation in Antitrust, 29 Syracuse J. Int'l L. & Com. 263 at 283-91.



사건의 처리에 있어 관련당사국간 협력이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한편 합병규제의 실제규범과 절차를 국제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최근의 노력은, 비록 이로부터 합병규범의 국제적 통일이라는 성과를 단시일내에 거두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당사국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맺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기업간의 기업결합이라도 국내시장 및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을 발표하였으며(고시 제2003-1호), 이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신고요령은 기업결합 당사기업 중 일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8,300만 유로) 이상이고 이들 기업들의 국내매출액이 각각 30억원(210만 유로)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신고기준에 속한다고 평가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합병심사에 빈번히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⁸⁾ 실제로 지난달 Pechiney사에 대한 34억 유로 규모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했던 Alcan사의 합병신고 예비대상국 목록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⁹⁾ 이러한 상황은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합병심사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시급히 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심사가 활성화될 경우 우리의 합병규제의 내용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달라는 요구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제적 수준의 합병심사를 실시하기 위한 경제분석역량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초미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8) "South Korean shock for ICN," available at http://www.globalcompetitionreview.com/news/news_item.cfm?item_id=863#(visited Aug. 11, 2003).

9) "EC will clear Alcan deal," available at http://www.globalcompetitionreview.com/news/news_item.cfm?item_id=1032(visited Aug. 11, 2003).



본 협회,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매뉴얼) 열람 실시

본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준수편람(매뉴얼)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으로 미국 GE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에 관한 가이드, 일본 NEC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편람, 미국 변호사협회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 매뉴얼(Allied Signal Inc, Amoco, The BFGoodrich, Chevron, Columbia/Health Care, The Dow Chemical, General Electric, General Motors, Hogan & Hortson, IBM, IIT, Mobil, Owens-Illinois, Pfizer, The Quaker Oats, Rohm and Haas, Scientific-Atlanta Inc, TRINOVA, United Technologies, Dupont 등),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LG 전자, KT, 포스코, 동양제철화학, 롯데쇼핑, 삼성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대주건설, 신세계, 현대백화점, 제일제당, KT&G, KT프리텔, LG MRO, SK 등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과 LG그룹의 공정거래법 업무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회원사에서 열람을 희망하는 경우 필요한 편의를 제공코자 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 바랍니다.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 작성

본 협회에서는 각 회원사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공정거래 관련 자율준수편람을 업종에 맞게 작성해 드리고 있으니,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작성 계획이 있으신 각 회원사는 상담 및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75-8870 ~ 2 / FAX (02)775 ~ 8873